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30일, 김준혁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4.11.27.) 상정,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2.10.) 상정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2.1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9.) 상정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16.) 상정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22.)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9.25.) 상정,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준혁의원)

최근 무인판매기 또는 쿠팡, 네이버 등에서 청소년들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이 2016년 9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에는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처럼 조작하여 국내에 유통해 왔음.

이후 정부는 이러한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조작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탈세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인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연초의 잎, 줄기, 뿌리를 구분하지 않고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연초에서 추출된 모든 니코틴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자 이들 업체들은 다시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이제는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의 언론보도(2024년 10월 2일 SBS보도)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52개 액상 전자담배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중 50개의 제품에서 연초잎니코틴 성분이 검출된 바 있음.

현재 합성니코틴은 연초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과 달리 화학물질 합성을 통해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으로서 RS니코틴, S니코틴과 같은 합성니코틴은 그 제조방법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으며, 제조방법을 보면 연초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음.

또한, 합성니코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환경부의 규제를 받고 있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한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의 유해성 심사를, 「화학물질관리법」은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특별히 2% 초과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합성니코틴이 「담배사업법」 등의 규제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하여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거짓 표기하여 무인판매기 또는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으로 판매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상의 세금 등을 탈세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담

배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2.)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태호)

담배 정의 확대와 관련한 박성훈의원·김태년의원·김선민의원·남인순의원·한지아의원·전진숙의원·김준혁의원·송언석의원·최은석의원·조은희의원·김민전의원·송재봉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